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0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최수진・임이자・김예지

강선영 • 인요한 • 조정훈

김선교 • 박준태 • 김장겸

김상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 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 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용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출연금"을 "출연금·보조금·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연금을 지급할"을 "출연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맺거나"를 "맺는 경우또는"으로,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를 "따라 출연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연금의지급·사용·관리에"를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융자의대상·기준·상환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 |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 |
| 업의 추진) ①·② (생 략) | 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 |
| | 음) |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 | 3 |
| 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 | |
| 의 자의 <u>출연금</u> 이나 기업의 기 | 출연금・보조금・융자금 |
| 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
|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 | 4 |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 |
| 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
| 이나 단체 등에 <u>출연금을 지급</u> | <u>출</u> 연금·보조 |
| <u>할</u> 수 있다. | 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 |
| | <u>을 융자할</u>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 5 |
|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 | |
| 약을 <u>맺거나</u> 제3항 및 제4항에 | <u>맺는 경우 또는</u> |
| <u>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u> 특정 | <u>따라 출연금·보조금</u> |
|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 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하 |
|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u>는 경우</u> |
| | |
| | |
|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 6 |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츠서그 Hフ그이 키그 기Q |
|------------------|
|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 |
| |
| ·관리, 융자의 대상·기준·상 |
| |
| 환 등에 |
| <u> </u> |
| |
| • |